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문 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하고, 소규모·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률·행정 중심의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공개 인적사항에 업종·직종 추가(안 제40조의4제1항)

국민연금·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고액·상습체납자의 ‘업종·직종’을 공개 인적사항에 추가

나. 영세사업장 보험사무 지원 확대(안 제52조제1항, 제2항, 제5항)

지원제도 용어를 정비하여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알기 쉬운 체계로 개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노무제공자

제40조의4제1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직종”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용촉진장려금””을 ““사업장 가입 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및 사업장 가입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보험료 납부 지원금”으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을 “피보험자 관리 지원
금 및 사업장 가입 지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② (생략) ③·④ 삭제 <u><신설></u>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 4조의5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 4조의11제2항제2호 및 제4항 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을 취득한 노무제공자
제40조의4(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의 6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 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을 포함한다), <u>나이</u> , 주소, 체납 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하여야 하	제40조의4(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 ----- ----- ----- <u>나이, 업종·직종</u> ----- -----

고, 채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
다.

② ~ ④ (생략)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
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
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
주의 과세소득(「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
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
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
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
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
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
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

-----.

-----.

1. -----

----- “보험료
납부 지원금”-----

2. -----

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 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실적,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 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반기마다 지급하고,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은 분기마다 지급한다.

③·④ (생략)

⑤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3. -----

----- “사업장 가입 지원금”-----

② -----

----- 보험료 납부 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및 사업장 가입 지원금-----.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경우에는 <u>징수사무대행지원금</u>은 매 반기, <u>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u> 및 <u>적용촉진장려금</u>은 매 분기가 끝나는 날(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지일을 말한다)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u>보험료 납부 지원금</u>----- ----- <u>피보험자 관리 지원금</u> 및 <u>사업장 가입 지원금</u>-----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73